



LAW Common Sense Information

부동산가압류의 신청원인을 확인하려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관할법원을 찾아가 사건기록을 열람 등사하여야 한다.



글/ 박종복 변호사

QUESTION

A 사업을 하던 남편이 최근 사망하였다. 남편 유물을 정리하던 중 남편 사망직전에 A라는 사람이 남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남편에게 물품을 공급하던 사람이다.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남편의 빚이 있다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

귀

귀하가 먼저 하여야 할 일은 A가 어떤 사유로 남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가압류를 명한 관할법원 및 사건번호를 확인한 후 관할법원을 찾아가 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다. 자세한 가압류 신청원인은 위 가압류신청사건 기록을 열람 등사하면 밝혀질 것이나 추측컨대 A는 귀하의 남편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남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귀하는 남편의 유산 및 부채규모를 확인하여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신청을 하여 남편의 부채를 상속받지 않아야 한다. 만약 남편의 유산이 부채를 정리하고도 남음이 있다면 귀하는 남편의 상속인의 지위에서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과 공동으로 A를 상대로 가압류이의신청 및 본안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A가 본안제소를 하여오지 않으면 부동산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으며, A가 물품대금청구 등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온다면 그 소송절차에 응소하여 남편이 실제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 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남편이 사망하여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의 문서 및 기록을 잘 살펴 읽고 대처하거나 남편이 사업할 당시의 경리담당자들에게 확인하여 대처하여 나가는 것이 최선의 길로 보여진다.